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0. 18.(화)	
담당 부서 <총괄>	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	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(10.18.) 조치 의결-

주요 내용

□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18일 제18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**참준글로벌(주)** 등 2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비상장사인 **주은테크(주)**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**한국공인회계사회(위탁감리위원회)**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	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	책임자	국 장	윤정숙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문정호 (02-3145-7313)
<공동>	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	책임자	본부장	한진희 (02-3149-0361)
		담당자	팀 장	김영미 (02-3149-0364)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2.10.18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참존글로벌(주) 결산기 : 2018.12.31. 2019. 3.31. 2019. 6.30. 2019. 9.30.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: 산업용 로봇 제조업	【회사】 ① 영업보증금 허위계상 (’19년 반기 500백만원, ’19년 3분기 17,500백만원) - 회사는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이라는 가공의 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선금금 과대계상 (’18년 ~ ’19년 3분기 512백만원) - 회사는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자산 성격의 금액을 선금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	회 사 : - 증권발행제한 12월 ※ 前 대표이사 및 前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같음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주은테크(주)</p> <p>결산기 : 2018.12.31. 2019.12.31.</p> <p>비상장법인</p> <p>업종 : 주형 및 금형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‘18년 5,408백만원, ‘19년 2,774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금형제작 매출 계상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, 계약금액 대신 건적금액을 적용하거나, 진행기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</p> <p>※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증권발행제한 4월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주은테크(주)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‘18년 5,408백만원, ‘19년 2,774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회사의 금형제작 매출 계상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</p>	<p>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(제162호)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과징금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- 주은테크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주은테크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6시간 <p>공인회계사 2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- 직무연수 2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)